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

(홍국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62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발 의 자: 홍국표 의원(1명)
찬 성 자: 곽향기, 김규남, 김용호,
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
김태수, 김형재, 남궁역,
박춘선, 신복자, 이상욱,
이성배, 장태용 의원(14
명)

1. 주문

- 현행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농안법”)은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에 대한 평가 권한을 중앙정부가 독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공영도매시장마다 거래 규모와 유통 여건이 달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도매시장 운영을 수행하는데 큰 제약이 되고 있음.
- 현재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재지정권은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반면, 평가권은 중앙정부가 행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유통 정책을 추진하려면 지정 및 재지정 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지정권과 평가권을 개설자에게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.
- 이에 따라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유통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가 권한을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도록 농안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및 재지정 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직접 평가함으로써 공영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이 가능해지고,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행 농안법의 평가 권한을 개설자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함.

2. 제안이유

- 현행 「지방자치법」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과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,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평가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시켜 지역 실정에 맞는 시장 운영과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음.
- 또한, 급변하는 농수산물 유통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농안법의 개정 이 지연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가중되고 가격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,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경쟁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·소비자·유통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농안법 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

4. 이송처

- 국회,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

- 공영도매시장은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농안법”)에 따라 운영되며,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 유지,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.
- 하지만 도매시장의 주요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은 농업과 무관한 거대 기업의 영향 아래 독점적 수탁구조를 유지하며, 가락시장 도매시장에서 독과점 체제를 지속하고 있다.
- 이에 따라, 농안법이 보장하는 공익성을 내세우면서도 높은 배당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해왔으며, 그 과정에서 가격 변동성과 농민의 어려움을 외면해 온 문제가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.
- 그러나 현행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, 중앙정부가 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주요 권한을 독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.
- 특히,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기준이 모호하여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고 있으며, 중앙도매시장의 운영 규정 변경 시 중앙정부의 승인 절차를 강제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

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.

- 따라서, 지방자치단체가 도매시장 운영을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통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, 공영도매시장의 유통 주체 지정 및 평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농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.

2025. 4. .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